

수원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258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2582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3 선고 2018가합40269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동현, 최성길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승봉철

변론 종결 2021. 7. 22.

판결 선고 2021. 10. 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3. 선고 2018가합4026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2행의 "증거만으로는"을 "증거, 특히 갑 제5, 6, 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제정

판사박광서

판사차지원